
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

(대통령령 제32915호 2022. 9. 20. 일부개정)

조항	이전	개정
제2조 제1항 제3호	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 , 이하 "협동조합"이라 한다) 가.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.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.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	3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(이하 "협동조합"이라 한다) 가.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.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.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

□ 개정의미

- ① 기존 장애인기업의 범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배제되어 우선구매 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점 개선 -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가능
- ② 혜택
 -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: 장애인기업 제품
 - 정책자금(경영자금 등) 지원사업 참여시 장애인기업으로 우대 등